

개정법령

건축법시행규칙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영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 4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영 제 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배치도와 별표 1의 4란, 5란 및 9란의 해당 도서를 첨부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별표 1의 1란의 도서(도시계획구역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란의 도서중 배치도 및 평면도에 한한다)

3. 별표 1의 2란 내지 9란중 건축물의 구조·용도 및 규모에 따른 각 해당란의 도서

② 영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대수선허가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 48조 및 영 제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첨부도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④ 법 제 49조 및 영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또는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허가를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공작물축조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과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도서에 공작물등의 축조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작물축조허가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1. 공작물등을 축조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공작물등의 배치도
3. 공작물등의 구조도

⑤ 시장·군수는 제 1항 내지 제 4항에 정한 첨부서류 및 도서외에 법·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조 (건축허가서등) ① 법 제 5조제 1항, 법 제 48조 및 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의 허가서는 별지 제 1호서식·별지 제 2호서식·별지 제 3호서식 및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 5조제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의 허가를 하지아니한 때의 건축등 불허가통지서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다.

제 4조 (증축등의 신고) ① 영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항의 증축등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 6호서식의 신고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조 (건축허가수수료) 영 제 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법 제 4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안에서 그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조 (건축허가대장등) 시장·군수는 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법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 7호서식의 건축허가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7조 (위법사항의 보고등) ① 공사감리자는 법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에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가 불응한 때 또는 그 시정을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그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8 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 6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 (착공신고등) ① 영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의하고, 완료에 관한 신고(이하 “준공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 11 호서식 또는 별지 제 12 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

② 영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 11 호서식 또는 별지 제 12 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

③ 제 2 조제 5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준공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9 조 (가사용승인신청) ① 영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은 별지 제 13 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 1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 13 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 (중간검사) ① 영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신청은 별지 제 14 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 1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 14 호서식에 의한다.

제 11 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 12 조제 1 항에서 “전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 2 조 각항에서 정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협의서”로, “허가신청”은 “협의”로 한다.

제 12 조 (검사업무의 대행등) ① 건축사업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 2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업무대행을 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준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관계도서에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27 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서에는 건축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7 호의 2 서식의 건축물준공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준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축등허가서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의 또는 승인등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 5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2.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또는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한 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제 13 조 (옹벽의 구조등) 영 제 14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구분 \ 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 쌓 기	1 : 0.30	1 : 0.35	1 : 0.40
활 쌓 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분 \ 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석축용돌의 뒷길이 (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 두께 (센티미터)	30 40	30 50	30 6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 까지 띠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층수	1 층	2 층	3 층이상
띄는거리 (미터)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 미터 이내에 물은 배수관은 주철관·강관 또는 흠페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 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군수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은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그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할 때에는 그 경사도

가 토질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비율이 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따라 위해방지를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토질	경사도
경암	1 : 0.5
연암	1 : 1.0
모래	1 : 1.8
모래질흙	1 : 1.2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절토, 절성토	1 : 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절성토	1 : 1.5

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할 때에는 주변의 지반의 빠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 · 절토부분 또는 뒤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시장 · 군수가 그 비탈면의 토질 · 경사도등으로 보아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이하 "식생"이라 한다) 등을 할 것. 다만, 식생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식생만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 · 콘크리트블럭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거실의 조명)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3에 정하는 조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각세대간의 경계벽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럭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터 · 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차음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7조 (계단의 구조) 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 및 계단참의 폭 ·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의 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주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국민학교의 학생용계단	150이상	16이하	26이상
중 · 고등학교의 학생용계단이나 판매시설 · 관람집회시설 기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	150이상	18이하	26이상
그 바로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지상층의 계단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120이상	20이하	24이상
기타의 계단	75이상	22이하	21이상

② 제1항의 경우에 돌움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 전시시설 · 운수시설 ·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온돌의 구조) 법 제23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고정식연탄아궁이의 연소통의 주위벽, 이동식연탄아궁이의 핵실벽과 아궁이 및 그 바닥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시멘트와 연탄재를 1 : 7의 용적비로 배합하여 시공하는 시멘트모르터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열전도저항의 값은 1킬로칼로리당 제곱미터 시간 섭씨도 ($m^2 h^{-1} \text{ °C} / \text{Kcal}$)로 나타낸다.
3. 온돌의 고래바닥과 두들벽에는 물이 고래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하고,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1.5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열전도저항의 값은 1킬로칼로리당 제곱미터 시간 섭씨도 ($m^2 h^{-1} \text{ °C} / \text{Kcal}$)로 나타낸다.

4. 고래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 : 5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끌언덕을 설치할 것.
5. 부뚜막식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판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난방설비를 하는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별표 4에 정하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은 열관류율의 값이 0.5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두께이상인 단열재로 단열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 ($\text{Kcal} / \text{m}^2 \text{h}^\circ\text{C}$)로 나타낸다.
2.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두께의 2분의 1 이상인 단열재로 단열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 ($\text{Kcal} / \text{m}^2 \text{h}^\circ\text{C}$)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그래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 ($\text{Kcal} / \text{m}^2 \text{h}^\circ\text{C}$)로 나타낸다.
4.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출입문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에는 턱솔개탕·풍소란 또는 “문소란” 등을 만들어 기밀성능이 있도록 할 것.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41조제 3항의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5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어서의 배연 설비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통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외기 또는 굴뚝(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항상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시에는 배연에 따라 발생하는 기류에 의하여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배연구가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개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능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제21조 (헬리콥터착륙장의 설치기준) 영 제4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헬리콥터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폭이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벽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착륙대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표시하되, 그 선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 표지의 선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22조 (배관설비)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정장치를 설치할 것.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음료수용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급수탱크 및 저수탱크에는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금속성의 탱크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수용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판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 ④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가스사업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환기설비)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 나. 급기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 1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 다. 배기구(거실에 면하는 배기통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 라.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바. 급기구·배기구 및 배기통의 최상부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2.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기 및 배기기를 갖추거나 급기기 및 배기구나 급기구 및 배기기를 갖출 것.

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국부적으로 현저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라.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기팬은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환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3.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준하는 구조로 하는 외에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구 분	기 준
공기중에 섞여 있는 먼지의 양	공기 1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 이하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1백만분의 10이하
탄산가스의 함유율	1백만분의 1천이하
상 대 습 도	40퍼센트이상 70퍼센트이하
기류의 이동속도	1초간 0.5미터이하

제 24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53조 본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탑승인원수에 따라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 제곱 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초과
의료시설 관립집회시설 판매시설	2 대	2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기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 대	1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 대	1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제 25조 (승용승강기등의 구조) ① 승용승강기 및 영 제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이하 “승강기”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②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에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은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 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장치

④ 비상용승강기는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 26조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
- 제27조** (변소의 구조등) ①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처되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하고,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방수조치를 하여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변조는 내수재료를 사용하고 유효한 방수 조치를 할 것.
4. 변소의 창 기타의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할 것.

③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띄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아래 3 미터이상의 깊이에 묻은 폐쇄식우물로서 그 도수판에 바깥판이 있고, 그 도수판 및 바깥판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2 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 제28조** (하자보수) 영 제93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하자”라 함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하자로서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 균열·처짐·비틀림·들뜸·내려앉음·파손·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 및 연결등 불량

- 제2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 법 제42조 제5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라 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법건축물표지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위반건축물설계자등의 보고) 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제31조** (신분증명서)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제32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47조 제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이재민의 임시수용등 재해구조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이재민이 스스로 임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시장·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 설치하는 가설통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으로서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하는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4. 시장·군수가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가설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5.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②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3조** (건축허가표시)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① 3층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의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상 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주위시설물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주변환경 또는 공사의 상황에 따라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사현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 이내이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이상인 곳에서 찌꺼기자재등을 투하할 때에는 다스트슈트를 사용하는등 공사현장 및 주변에 찌꺼기자재가 흩어져 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사용자재는 무너져내리는 경우등에도 그 위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안전하게 쌓아두어야 한다.

- ④ 공사중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불연재료로 구획하는등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 (지하층설치의 특례)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이라 함은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가 1제곱미터마다 20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36조** (경사도의 표시방법) ① 제13조 제1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호와 영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의 표시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수평거리 : 높이)에 의한다.

- ②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래바닥의 경사도,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 및 영 제9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붕의 물매의 경사도의 표시는 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 : 수평거리)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 2조 제 1항 관련)

구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축적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배치도	임의	1. 축적 및 방위 2. 대지면적·건축선·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옹벽·우물·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6.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7. 공사기간중의 도로접용범위
	각 총 평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적 및 방위 2. 각실의 용도 및 면적 3. 기둥·벽·개구부의 위치 및 치수 4.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5.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6. 비상용승강기·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2 면 이상의 입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적 2. 외벽의 마감재로 3.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굴뚝의 육상돌출부 5. 국기게양대
	2 면 이상의 단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적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상세도	임의	1. 축적 2. 벽·기둥·바닥·보·지붕·처마 및 반자의 구조(단열재료의 종류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3. 방화문의 구조 4.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공사시방서	—	1. 도면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재료의 품질 및 공법등 2. 기타사항
2	영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구조안전의 확인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서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산정 및 단면산정의 과정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부재의 접합부분의 상세
		실내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
4	법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오수정화시설등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도	30분의1 내지 50분의1	1.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평면 및 종·횡단면 2. 구조계산과 정화도의 산정(처리대상 인원 500인이상의 것인 경우에 한한다)
		조경계획	임의	1. 식수 및 조경구조물의 배치 2. 식수면적의 계산
6	건축설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설비도	임의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치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

비의 설치계획			
7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소방설비도	임의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라설비·각종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8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주차장 평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9 토지의 형질변경을 요하는 경우	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의	1. 축적 및 방위 2. 종·횡단선 3. 구조물의 위치
	토지의 단면도	임의	1. 축척 2. 단면상세 (구조물 및 인접토지를 포함한다)

[별표 2] 건축허가수수료

[제 5조관련]

면적	금액 (원)
200 제곱미터 미만	5,000 2,000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200 제곱미터 이상	10,000
1천 제곱미터 미만	3,000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천 제곱미터 이상	25,000
5천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50,000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200,000

비고: 위의 금액은 허가 1건당 액수임.

[별표 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제 15조관련]

거실의 용도구분	조도 구분	바닥위 85센티미터의 수/평면의 조도 (룩스)
1. 거주	독서·식사·조리 기타	150 70
2. 집무	설계·제도·계산	700

	일반사무	300
	기타	150
3. 작업	검사·시험·정밀검사·수출	700
	일반작업·제조·판매	300
	포장·세척	150
	기타	70
4. 집회	회의	300
	집회	150
	공연·관람	70
5. 오락	오락일반	150
	기타	3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것.	1란 내지 5란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

[별표 4]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완화구역

[제 19조단서관련]

도별	시군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 영광군·함평군·신안군·무안군·영암군 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 보성군·승주군·고흥군·여천군·광양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월성군·영일군·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상남도	마산시·울산시·진주시·창원시·진해시 충무시·삼천포시·김해시 하동군·진양군·사천군·남해군·의령군 고성군·통영군·거제군·함안군·밀양군 김해군·의창군·양산군·울주군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별표 5] 단열재의 두께기준

[제 19조 제 1호 및 제 2호 관련]

재료명	두께 (밀리미터)	비고
유리면	50	각 재료는
난연성발포폴리스티렌폼	50	동력 자원
포리우레탄폼	50	부장관의
요소발포보온재	50	형식 승인
암면(광석면)	50	을 얻어 생
석면	60	산한 건축
규산칼슘	60	물의 보온
탄산마그네슘	70	재이어야
코르르	70	한다.
페라이트	90	
기		열전도저항의 값 이 $1.6 \text{m}^2 \text{h}^\circ\text{C} / \text{Kcal}$ 이상되는 두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1. 신청내용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⑨위치						
⑩지역		⑪지구				
⑫지목		⑬전면도로폭m				
⑭면적m ²		⑮조경면적m ²				
⑯주용도		⑰부속용도				
규모	구분 면적m ²	신청부분 부분	신청이외부분	⑲합계	⑳공사종별	
	⑯건축면적			㉑전체율%		
	⑯연면적			㉒용적율%		
㉓구조		㉔층수	지하()층 지상()층			
㉕지하층면적 m ²		㉖주차면적 m ²				
㉗착공예정일	년 월 일	㉘준공예정일	년 월 일			
㉙표준설계도서번호	제호	㉚토지형질변경 면적 m ²				
㉛가설건축물	면적	m ² , 구조				
㉜도로점용	면적	m ² , 점용기간				
㉝배수시설	배수량	구조				
㉞오수정화시설 및 ㉟분뇨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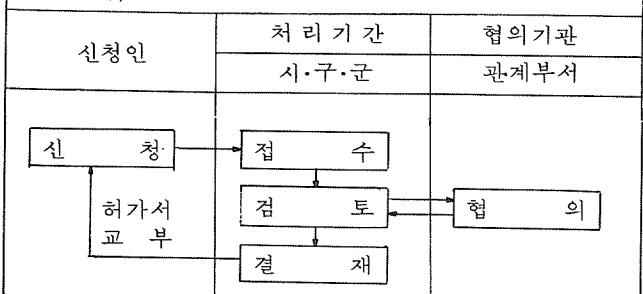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자 ①

(시장·군수)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수 | 수 | 료 |
| |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에의함 | | |
-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계도서 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부 및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1의 4란, 5란 또는 9란에 정하는 해당도서 각 1부에 한한다)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공사용기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①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매 () 매증
⑯주용도	㉗공사종별											
㉘부속용도	㉙총수											지하 () 층
바닥면적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㉔신청부분												
㉕신청이외부분												
㉖합계												
㉗내력벽의 두께 cm												
㉘침가재 지침간의 거리 m												
㉙층높이 m												
㉚거실의 반자높이 m												
㉛주요구조부												
㉜기초												
㉝벽체												
㉞외벽												
㉟반자												
㉟최고높이 m												
㉟채광면적비율 %												
㉟승용승강기 대수												
㉟냉난방식												
㉟전기설비용량												
㉟지붕												
㉟처마높이 m												
㉟직통계단의 수												
㉟비상용승강기 대수												
㉟변소형식												
㉟기타												

작성요령

-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입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안을 =로 삭제 표시한다.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5. ④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기입한다.
6. ④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한다.
7. ⑤란은 그 층의 층높이중 최대의 것을 기입한다.
8. ⑥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한다.
9. ⑦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기입한다.
10. ⑧란은 지붕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한다. (예 : 철골트러스위스레이트)
11. ⑨란은 기초형식을 기입한다. (예 : 콘크리트말뚝 위 독립기초)
12. ⑩란은 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한다.
13. ⑪란은 주재료를 기입한다.
14. ⑫란은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를 기입한다..
15. ⑬-⑯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입한다.
16. ⑭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등으로 기입한다.
17. ⑮란은 수세식, 제거식으로 기입한다.
18. ⑯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한다.

[별지제 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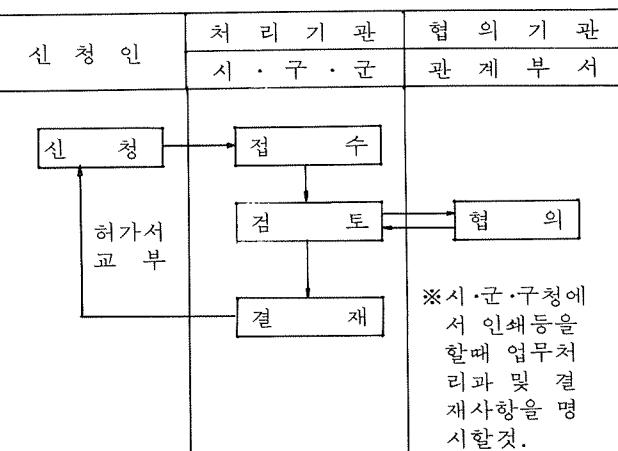
대수선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대지위치				
⑤건축면적 m ²		⑧주용도		
⑥연면적 m ²		⑨부속용도		
⑦구조	⑩총수	지하()층 지상()층		

⑪ 대수선 내용

- 가. 내력벽의 벽면적 () m² 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다.
- 나. 기둥 () 개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다.
- 다. 보 () 개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다.
- 라. 지붕틀 () 개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다.
- 마.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다.
- 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다.
- 사.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 부형태 색 담장을 변경한다.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건축물의 대수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⑪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평면도(대수선허가하는 건축물의 총)		
2. 단면도(" ")		
수수료	없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허가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 5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법 제 47조 제 2항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도로법 제 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⑪

[별지제 3호서식]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⑥주소	(전화)			
⑨대지위치				
⑩지역		⑪지구		
⑫건축면적 m ²		⑭주용도		
⑬연면적 m ²		⑮부속용도		
⑯구조	⑰총수	지하()층 지상()층		
⑱용도변경내용				

구분 층별	변경 전		변경 후	
	용도	면적 m ²	용도	면적 m ²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용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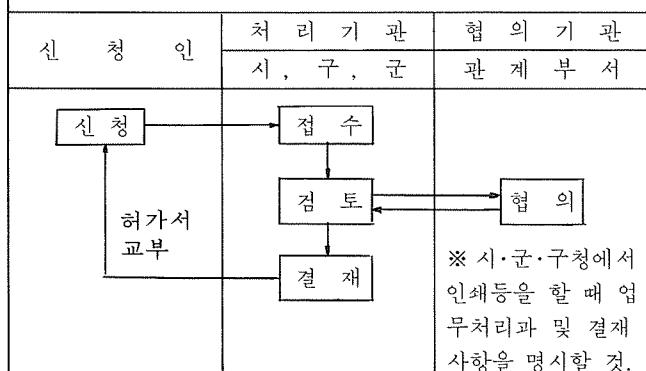
신청인 ①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 | |
|-----|
| 수수료 |
| 없음 |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구조내력·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건축물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제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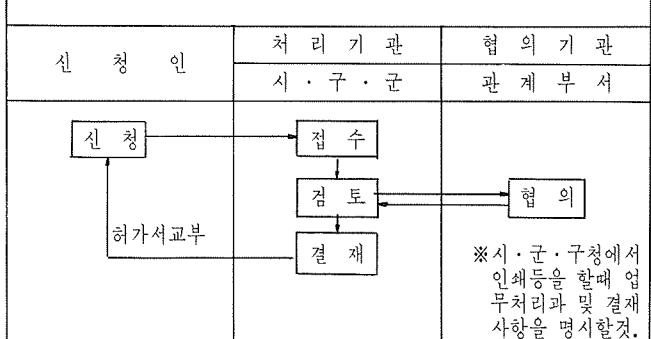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②

[별지 제 4 호 서식]

공작물축조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일자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공사 시공자	⑨성명 ⑪주소 또는 전화	⑩건설업면허번호 전화	제호
⑫대지위치			
⑬지역·지구	⑭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⑮ □가. 높이()미터의 줄뚝 □라. 높이()미터의 고가수조 □나. 높이()미터의 장식탑·□마. 높이()미터의 옹벽· 기념탑 □다. 높이()미터의 광고탑·□바. 바닥면적()제곱미터의 물용광고판 지하대회호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작물의 축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1부 3. 구조도 1부		수수료 없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제호

이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축조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②

[별지 제 5 호 서식]

제호			
건축 등 불허가 통지서 () 귀하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대지의 위치			

<p>(5) 허가신청구분</p>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건축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건축)</p>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대수선</p>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용도변경</p> <p><input type="checkbox"/> 공작물의 축조</p>	
<p>(6) 사유</p>	
<p>귀하의 허가신청은 위 사유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건축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시장·군수·구청장) ①</p>	

<pre> graph TD 신고[신고] --> 접수[접수] 접수 --> 검토[검토] 검토 --> 결재[결재] 결재 --> 신고증교부[신고증교부] 신고증교부 --> 신고 </pre>	<p>※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 사항을 명시할 것.</p> <p>년 월 일</p> <p>(시장·군수·구청장) ②</p>
---	--

[별지 제 6 호 서식]

증축등신고서				처리기간
				일
(1)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재건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설계변경		
건축자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대지의 위치				
⑥ 지역	⑦ 지구			
⑧ 대지면적 m ²	⑨ 공사종별			
⑩ 주용도	⑪ 부속용도			
규모	구분면적 m ²	⑫ 신청부분	⑬ 신청이외부분	⑭ 합계
				⑮ 공사또는변경면적 m ²
				⑯ 건폐율%
			⑰ 연면적	⑲ 용적율%
⑯ 건축면적				
⑯ 연면적				
⑳ 구조	㉑ 총수	지하()층	지상()층	
㉒ 착공예정일	년 월 일	㉓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건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평면도 1부				
2. 단면도 1부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군	관계부서

건축허가대장		대장번호	제호	
허가번호	제호	년월일	착공년월일	년월일
① 허가년월일	년 월 일	② 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③ 준공년월일		년 월 일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성명	⑧ 건축사업허번호			
⑨ 주소 또는 사무소명	⑩ 등록번호	제호		
⑪ 성명	⑫ 건축사업허번호			
⑬ 주소 또는 사무소명	⑭ 등록번호	제호		
⑮ 성명	⑯ 주민등록번호			
⑰ 주소 또는 호	⑱ 건설업면허번호	제호		
⑲ 위치				
⑳ 대지면적 m ²	㉑ 지역	지역	㉒ 지구	지구
㉓ 주용도	㉔ 기타용도			
㉕ 건축면적 m ²	㉖ 바닥면적 m ²			
㉗ 기초부분		연면적		
㉘ 구조	㉙ 용적률 %	㉚ 건축물의 높이 m	㉛ 주차장의 면적 m ²	
		기준층의 고	최고높이	옥내 옥외 계
㉜ 담당공무원	허가	과장	과장	담당
		①	①	①
준공	①	①	①	①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허가변경사항

구분	1차허가	2차허가	3차허가
㉜ 건축주			
㉝ 허가번호	제호	제호	제호
㉞ 허가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설계자	③⑥성명			
	③⑦사무소명			
공사감리자	③⑧성명			
	③⑨사무소명			
공사시공자	④⑩성명			
	④⑪상호			
용도	④⑫주용도			
	④⑬기타용도			
④⑭건축면적	허가부분 계			
	④⑮면적			
⑯전체율 % (기준포함)				
⑰용적율 % (기준포함)				
⑱주차장면적 (기준포 함) ㎡	옥내			
	옥외			
	계			
⑲건축물최고 높이 ㎡				
⑳준공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⑳담당 공무원	과장	⑪	⑪	⑪
	계장	⑪	⑪	⑪
	담당	⑪	⑪	⑪

[별지제 8호서식]

위법건축공사보고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공사시공자	④성명 또는 ⑤전설업면허번호	제호		
	⑥주소	(전화)		
⑦대지위치				
⑧허가번호 제호 ⑨허가일자 년월일				
⑩착공일자 년월일 ⑪준공예정일 년월일				
위법사항	⑫발생일자	년월일		
	⑬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조치내용	⑭조치일자	년월일		
	⑮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년월일 공사감리자 ⑯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법내용
조치내용

[별지제 9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공사시공자			즉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대지위치			
⑤허가번호		제호	⑥허가일자 년월일
⑦착공일자 년월일		⑧공정 %	
⑨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⑩성명			
⑪면허번호			
⑫사무소명			
⑬사무소위치			
⑭공사감리 또는 시공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위와같이 건축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input type="checkbox"/> 공사시공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⑯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제 10호서식]

착공신고서				
1. 신고내용				
※ 접수번호 □□□□				
①건축장소	시도	구군	동리	번지(통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건축주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③설계자	사무소명			
	주소	(전화)		
④감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⑤시공자	주소	(전화)		
	성명 또는 제호	전설업면허번호	전설업면허번호	
⑥허가일자	년월일	⑦허가번호	제호	
⑧착공일자	년월일	⑨폐정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착공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⑯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동별건축내용				

기재요령

1. ※ 표한 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기재할 것.
3. 동별 전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⑪⑫⑬⑭⑮⑯ 난은 □안에 해당한 번호를 기재할 것.

나. ⑪건축주 :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위원회 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다. ⑬건축물의 용도 :

대중음식점·복덕방·떡방앗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건어물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적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⑭이하의 난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 ⑭건축물의 구조 :

기둥 또는 내벽력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할 것.

마. ⑯주택의 형태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바. ⑰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어,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⑯건축공사의 경우 총 수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층	
⑰건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신축건물이 2동 이상인 때만 삼만 만 천 백십일 경우는 1회만 기입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 ²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		
⑯사업주체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2. 등록업자 3. 지정업자 4. 주택조합 5. 기타 <input type="checkbox"/>	
⑯주택의 형태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input type="checkbox"/>	
⑰주택의 종류	1. 전용주택 2. 병용주택 3. 기타 <input type="checkbox"/>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만 천 백십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 ²	
신설호수 (세대수)	(신축 및 호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의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대)	

[별지제11호서식]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1. 신고내용				
건축주	①성명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input type="checkbox"/> 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제호	
	⑤사무소명	<input type="checkbox"/>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제호	
공사 감리자	⑧주소	(전화)		
	⑨성명	<input type="checkbox"/> 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제호	
공사 시공자	⑩사무소명	<input type="checkbox"/>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제호	
	⑫주소	(전화)		
⑯대지위치	⑭설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제호	
	⑯주소	(전화)		
⑯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제호	<input type="checkbox"/> 년월일	
⑯면허일자	<input type="checkbox"/> 면허일자	<input type="checkbox"/> 준공일자	<input type="checkbox"/> 년월일	
※ 겸사일자	<input type="checkbox"/> 면허일자	<input type="checkbox"/> 준공일자	<input type="checkbox"/> 년월일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 동별준공)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건축허가서사본(건축법제5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신고증사본)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동별준공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2. 동별전축내용		⑯동별번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⑪건축주	1. 정부	2. 정부투자기관			
	3. 법인	4. 개인	<input type="checkbox"/> 5. 기타		
⑫공사종별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input type="checkbox"/>
⑬건축물의 용도	()용 건축물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⑭건축물의 구조	1. 목조	2. 조작조	3. 철근콘크리트조		
	4. 철골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 기타 <input type="checkbox"/>		
⑮공사부분의 면적	삼만 만 천 백십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 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판	협 의 기 판	
	시 · 구 · 군	관 계 부 서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접 수	협 의

제 호

건축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펼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검사로 건축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으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①

2. 신청건축물 등별개요		매
		() 매충
②주 용 도	④공 사 종 별	
③부 속 용 도	⑤총 수	지하 { 지상 } 총
바 구분 <small>총별</small>	총	총
탁	총	총
⑥신청부분		
면		
적		
⑦신청이외부분		
⑧합 계		
⑨기둥치수의 뚜껑 cm		
⑩가짜지접간의 m		
⑪총 높 이 m		
⑫거실의반자높이 m		
구 조	⑬주요구조부	⑯지붕
	⑭기초	⑰처마
	⑮벽체	⑲콘크리트설계강도 kg/cm ²
단	⑯외벽	⑳바닥
일	⑰반자	㉑창호
	㉒고 높 이 m	㉓처마높이 m
	㉔채광면적비율 %	㉕직통계단의 수
	㉖승용승강기대수	㉗비상용승강기대수
	㉘냉 · 난방방식	㉙변소형식
	㉚전기설비용량	㉛기타

[별지제12호서식]

□ 용도변경	□ 공작물의 축조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판	협 의 기 판
시 · 구 · 군	관 계 부 서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접 수

제 호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공작물의 축조

에 대한 준공신고를 펼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①

[별지제13호서식]

가사용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전화)							
공사 감리자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호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호					
	(전화)							
공사 시공자	⑭성명 또는 호	⑮건설업면허번호	제호					
	⑯주소	(전화)						
⑰대지위치								
⑯허가번호		제호	⑯허가일자	년월일				
⑳착공일자		년월일	㉑준공예정일	년월일				
㉒용도		㉓공정	%					
가사용 신청 내용	구분별	총	총	총	총	총	총	계
	㉔신청구분							
	㉕신청이의 구분							
	㉖합계							
㉗가사용기간	년월일 ~ 년월일까지 (일간)							
※검사일자	년월일	※검사자	㉙					

[별지 제14호 서식]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호		
설계자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호		
감리자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호		
	⑬주소	(전화)			
	㉑준공예정일	년월일	㉒중간검사예정일	년월일	
시공자	㉓공정	%			
	㉔신청구분내용	(전화)			
※검사일자	년월일	※검사자	㉙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건축물의 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㉙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서 사본		수수료			
		없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군	관계부서		
신청		접수	협의		
교부		검사	결재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 할 것.					

[별지 제15호 서식]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군	관계부서		
신청		접수	협의		
교부		검사	결재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 할 것.					
제호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함.					
(시장·군수·구청장) ㉙					

위법건축물표지					
①위치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④허가또는착공년월일	년월일	⑤허가번호			
⑥주요용도					
⑦위반사항					
⑧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㉙					

[별지 제 16호 서식]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공사 감리자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호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호	
시공자	⑬주소	(전화)		
	⑭성명 또는 상호	⑮건설업면허번호	제호	
	⑯주소	(전화)		
⑰대지위치				
⑱허가번호	제호	⑲허가일자	년 월 일	
위반 사항	⑳발생일자	년 월 일		
	㉑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조치 사항	㉒조치일자	년 월 일		
	㉓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적발자	㉔적발일시	년 월 일		
	㉕직성명	직급	성명	⑲
건축법 제 4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 및 관련 설계자 등을 위와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⑲				

위반내용

조치내용

[별지 제 17호 서식]

제 호 건축물 등 출입 검사 공무원 증				
소속	직명	사진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공무원은 건축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전설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⑲			

[별지 제 18호 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위치				
⑤대지면적	m^2	⑥건축면적	m^2	
⑦용도	⑧연면적 m^2			
⑨구조	⑩총수 { } 층			
⑪준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⑫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 제 4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코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⑲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제 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				
건축법 제 4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⑲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위치				
⑤대지면적	m^2	⑥건축면적	m^2	
⑦용도	⑧연면적 m^2			
⑨구조	⑩총수 { } 층			
⑪준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⑫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준공예정일	년 월 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구	관계부서
<pre> graph TD A[신청] --> B[접수] B --> C[검토] C --> D[결재] D -. "교부" .-> A </pre>	<p style="text-align: center;">※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 할 것.</p>	

[별지 제19호 서식]

건축허가표지		
건축주	①성명	
	②주소	
설계자	③성명	
	④사무소명	
공사감리자	⑤성명	
	⑥사무소명	
공사시공자	⑦성명 또는 상호	
	⑧주소	
공사현장관리자	⑨성명	
	⑩주소	
⑪허가번호		⑫허가일자 년 월 일
⑬대지위치		
⑭건축면적		⑮연면적
⑯주요용도		⑰총수 지상()지하()
⑲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허가기관)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0, 937호 · 1982. 10. 23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4호 내지 제 6호를 제 5호 내지 제 7호로 하고, 동조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시설

제 3조제 1항제 2호 라목중 “건축물에 전조된 광장”을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으로 하고, 동조제 5호 다목중 “전각목에”를 “가목 및 나목에”로 하며, 동항제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시장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제 4조 제목중 “규모등”을 “규모”로 하고, 동조 제 3항 및 제 4항을 삭제한다.

제 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조의 2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될 시설)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의 시설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새로이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조제 1항제 1호중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지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으로 하고, 동항에 제 4호 내지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법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주택지·초지·파수원·도로변 기타 이에 유사한 토지에서의 축목의 재식 및 벌채와 농지에서의 축목의 벌채

6. 고사된 축목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축목의 벌채나 간벌·정지등 육립을 위한 축목의 벌채

7.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총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경우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건설부장관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은 그려하지 아니하며,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에 관한 계획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1) 미관지구
- (2) 고도지구
- (3) 방화지구
- (4) 교육 및 연구지구
- (5) 업무지구
- (6) 임항지구
- (7) 공지지구
- (8) 보존지구
- (9) 공항지구

(10) 아파트지구(아파트건설의 완료나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결과 아파트건설이 필요없게 된 잔여지에 대한 아파트지구해제를 위한 변경 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의 구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기타의 시의 경우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제외한다)
- (2) 광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을, 기타의 시의 경우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을 제외한다)
- (3) 주차장
- (4) 자동차정류장(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을 제외한다)

(5) 궤 도

(6) 삭 도

(7) 고속철도(본선을 제외한다)

(8) 하 천

(9) 항만(1종 지정항만을 제외한다)

(10) 녹지(철도변에 녹지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한다)

(12)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다)

(13) 유원지

(14) 관망탑

(15) 공공공지

(16) 공용의 청사

(17) 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을 제외한다)

(18) 도서관

(19) 시 장

(20) 수 도

(21)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22) 공동구

(23) 도살장

(24) 공동묘지

(25) 화장장

(26)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27) 전기공급설비

(28) 저수지

(29) 방풍설비

(30) 가스공급설비

(3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2) 방수설비

(33) 방화설비

(34) 사방설비

(35) 방조설비

(36) 연구시설

(37) 문화시설

(38) 종합의료시설

(39) 사회복지시설

(40) 통신시설

(41) 자동차검사시설

(42) 유수지시설

다.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결정 및 그 변경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의 구역안에서의 법 제 2조제 1항제 1호 나목의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1) 단위도시계획시설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구역의 변경(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등으로 인하여 도

- 시계획 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의 변경결정
- (3) 도시계획시설 내용의 결정 및 변경결정
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10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면적의 25분의 1 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정
 -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안에서의 폭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결정
 -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원의 전체면적 및 그 수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위치의 변경결정과 공원 상호간 면적의 변경결정
- 마. 기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등
 -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고시
 - (3)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
 -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의 승인(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과 하수도사업중 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5)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하수도사업중 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6)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권한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이 경우 당해시설종 학교시설에서는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을 제외한다.
-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면의 도시계획안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 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그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권한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도시계획구역중 별표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제1항제1호중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 제7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면적의 25분의 1 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정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시설의 변경결정
 3. 이미 결정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른 계획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및 시설내용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형도를 작성할 수 없는 공유수면인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의2제5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판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살장(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계장에 한한다)
- 제19조제2항제2호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및 전문대학”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4. 백화점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 제19조의4제1항중 “33평방미터이하”를 “33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가목중 “100평방미터이하”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동호나목중 “33평방미터이하”를 “33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사업 또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전축협의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제25조제 2항에 제 5호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제26조제 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대체될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제27조의 2 제 3항을 제 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관계서류사본의 공람은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의 변경

2.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제28조제 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타의 행정청인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 또는 기타의 행정청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 1항중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58조의 2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시에 있어서는 그 위원의 수를 13인까지 할 수 있다.

제61조제 3항중 “제58조제 3항 내지 제 7항”을 “제58조의 2 제 3 항 내지 제 7 항”으로 하고, “제58조제 3항”을 “제58조의 2제 3 항”으로 하며, 「도지사」를 “시장”으로 한다.」를 「도지사」를 “시장”으로 본다.」로 한다.

제66조제 1항제 2호 내지 제 4호를 제 3호 내지 제 5호로 하고, 동항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준용하고자 하는 법의 조항

제6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 3 (준공검사)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부장관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의 승인을 할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항 단서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

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제 1항중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를 “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로 한다. 제 5조제 1항, 제 5조의 2, 제 9조제 1항·제 3항, 제 10조의 2제 4항, 제 11조제 1항·제 2항, 제 13조제 1항 내지 제 3항, 제 14조제 1항 내지 제 3항, 제 14조의 2제 1항·제 3항 내지 제 8항, 제 19조의 5 제 1항·제 3항 내지 제 5항, 제 19조의 6제 1항, 제 19조의 7제 1항, 제 20조 제 1항 본문, 제 21조제 1항·제 3항, 제 25조제 1항·제 3항, 제 26조제 1항, 제 43조제 3항, 제 52조제 3항, 제 54조제 3항, 제 55조 제 1항·제 3항, 제 66조제 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 또는 면의 도시계획구역중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구역

경기도 화성군 및 시흥군의 반월도시계획구역

전라남도 여천군의 여천도시계획구역

충청북도 충원군 상모면 수안보도시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도시계획구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도시계획구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도시계획구역

[별표 5]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수 원	동 해	광 주	마 산
성 남	태 백	목 포	진 주
의 정부	청 주	여 수	울 산
안 양	대 전	순 천	진 해
부 천	천 안	포 항	제 주
춘 천	전 주	경 주	
원 주	군 산	안 동	
강 릉	이 리	구 미	

◇都市計劃法施行令 改正理由

都市計劃法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權限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는 對象을 정하고, 아울러 現行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市長·郡守의 許可없이 행할 수 있는 輕微한 行爲의 범위를 擴大함(令 第 5條 第 1項 第 4號 내지 第 7 號).

나. 美觀地區·高度地區등 地區의 指定 및 變更에 관한 權限 등 建設部長官의 權限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 委任할 事項에 관한 權限을 정함(令 第 6條).

다. 建築法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竣工検査를 받은 都市計劃事業에 의한 竣工検査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의 3 第 1項 但書). <법제처 제공>